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7.
3. 회부연월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 26조제1항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기획재정부	1. ~ 15. (현행과 같음)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u>여성가족부</u>	16. <u>여성청소년가족부</u>
17. 국토교통부	17. ~ 19. (현행과 같음)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여성가족부) <u>여성가족부장관</u>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u>청소년</u>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여성청소년가족부) <u>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u>-----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여성청소년가족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현행	개정안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의 행위 또는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또는 여성가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 여성청소년가족부 소속 공무원 또는 여성청소년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¹⁾²⁾³⁾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⁴⁾⁵⁾

-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8. (생략)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6. (생략)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3. (생략)
-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2.~8. (생략)
- 5)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2.~3. (생략)
 - 3의2. (생략)

현행 「정부조직법」은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⁶⁾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가족정책실⁷⁾에 청소년정책관⁸⁾을 두고 그 밑에 6개 과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가족정책관실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⁹⁾을, 권익증진국에서 폭력

4.~9. (생략)

6)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협의·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지원
14. 폭력·학대·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 2. 26.>
16. 취업·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청소년 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 21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1의3.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21의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37. (생략)

④ 삭제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8)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② (생략)

③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⑮ (생략)

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⑫ (생략)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23. (생략)

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 예방·보호·구조 등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¹⁰⁾을 담당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조직 및 인력 현황]

부서명	업무 내용
청소년정책과 (12명)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증,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권리 증진, 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감독 등
청소년활동진흥과 (10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 지원,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등
청소년활동안전과 (6명)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안전점검,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청소년자립지원과 (12명)	청소년 복지정책 총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담·통합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도·감독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7명)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총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등
청소년보호환경과 (11명)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업소·유해약물 등 유해환경 개선 및 점검, 청소년보호 위원회·음반심의위원회 운영, 인터넷중독 예방·치유 지원, 정서·행동문제 치유 지원, 청소년근로 권익보호 등

※자료: 행정안전부

- ⑭~⑮ (생략)
- 10) 「여성가족부 직제」 제10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생략)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
 - (생략)
 -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 ~7. (생략)
 -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의2. (생략)
 - ~11. (생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 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 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의2·15의3. (생략)
 - ~18. (생략)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정책 분야의 예산은 2021~2023년에는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16.1~19.7%(2,422~2,716억원)로 가족정책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고, 2024년도에는 양성평등정책 분야(14.2%, 2,448억원)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13.9%, 2,3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여성가족부 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2021~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구분	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합계	12,325	14,650	여성가족부 예산 합계	15,677	17,234
-	-	-	양성평등 정책	2,462 (15.7)	2,448 (14.2)
여성·성평등 정책	982 (8.0)	1,055 (7.2)	양성평등	1,090 (7.0)	1,098 (6.4)
권익 정책	1,234 (10.0)	1,352 (9.2)	권익보호	1,379 (8.8)	1,351 (7.8)
청소년 정책	2,422 (19.7)	2,716 (18.5)	청소년 정책	2,525 (16.1)	2,392 (13.9)
가족 정책	7,375 (59.8)	9,063 (61.9)	가족 정책	10,263 (65.5)	11,970 (69.5)
행정 지원	311 (2.5)	465 (3.2)	행정 지원	421 (2.7)	424 (2.5)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재구성

*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상의 정책 분야에 따라 기재함.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부 명칭과 관련된 가족, 양성평등 관련 사무 외에도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도 청소년 정책의 비중이 양성평등 정책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소관 사무인 ‘청소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주관 행정기관을 분명히 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청소년 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혁을 살펴보면, 체육청소년부, (국가)청소년위원회¹¹⁾와 같이 수행 기능들을 기관 명칭에 명확하게 표시 하였던 사례가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칭으로 대표적인 수행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을 보다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청소년 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 연혁]

- ▶ 1990.12.~1993.03. **체육청소년부**
 - 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
- ▶ 1993.03.~1998.02. **문화체육부**
 - 문화·예술·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
- ▶ 1998.02.~2005.03.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
- ▶ 2005.03.~2008.02.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청소년에 관한 사무
 -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 수행

11) 2005.03~2006.03 청소년위원회, 2006.03.~2008.02. 국가청소년위원회

- 개정이유: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함.

▶ 2008.02.~2010.03.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

▶ 2010.03.~현재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관장 사무에 ‘청소년’을 명시한 이후의 연혁이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을 대표하되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가족부는 2001년도에 여성부로 신설된 이후 3차례의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잦은 명칭 변경은 그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소요, 국민 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여성가족부 주요 연혁]

▶ 1998.02.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2001.01. 여성부 신설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

▶ 2004.06.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 2005.06. 여성가족부로 개편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

▶ 2008.02. 여성부로 개편(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

- ▶ 2010.03. 여성가족부로 개편(청소년·가족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자료: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부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주관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고, 보다 일관성 있게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부조직은 시대적 요구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